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·구속·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함(안 제28조제5항 신설).
-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.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).
-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함(안 제93조의2제1항제1호).

II. 검토의견

1.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명확화(안 부칙 제3조)

- 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

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.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<안 제56조제1항 및 안 부칙 제3조>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)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(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)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 1.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100분의 3 2.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<신 설> 3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	제56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)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(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)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 1.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100분의 3 2.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.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1만분의 66 3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- 안 부칙 제3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)는 해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납세의무 성립대상이 가산세인지 아니면 가산세의 부과 근거가 된 미납·과소납부 세액인지가 불분명하며,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서 발부를 통해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므로, 그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안 부칙 제3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 제3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, 제35조제2항제3호,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부 칙 제3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, 제35조제2항제3호,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2. 압류 해제 사유 정비 필요(안 제40조제1항제4호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3조 등)

- 안 제40조제1항제4호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‘압류’와 관련하여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으로, 현행 「국세기본법」 제28조제1항제4호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.
- 다만, 현행 「국세징수법」 제57조제1항제5호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

규정하고 있는 반면, 현행 「지방세징수법」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, 안 제40조제1항제4호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압류해제 사유로 전제하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「지방세징수법」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< 「국세기본법」 과 비교 >

국세기본법	지방세기본법	
	현행	개정안
제28조(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)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. 4. 압류(「국세징수법」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¹⁾ 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제40조(시효의 중단과 정지)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. 4. <u>압류</u>	제40조(시효의 중단과 정지)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. 4. <u>압류(「지방세징수법」 제40조²⁾, 제63조제1항제2호·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³⁾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

- 1) 「국세징수법」 제57조(압류 해제의 요건)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략)
 5.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
 6.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
 7. (생략)
- 2) 「지방세징수법」 제40조(압류금지 재산)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.
1. ~ 14. (생략)
- 3)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3조(압류해제의 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1. (생략)
 2.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 3.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략)
 5. 압류한 금융재산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,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
 6. (생략)

3. 기타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부칙 제4조(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)의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(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→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)하는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